

WTO농산물협정의 주요내용과 한국의 대응방안

박근수

경남정보대학 경영정보과 조교수

요 약

WTO체제하에서는 관세 및 관세상당액의 감축이행이라는 제약으로 농산물 수입제한정책의 탄력적 활용의 폭이 매우 좁다. 따라서 국내농업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관세인하 및 관세상당액의 감축과 WTO 규범을 적극 활용하여 관세화에 다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입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WTO에서 농산물에 대해 특별히 허용하고 있는 SSG에 의한 특별긴급수입제한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動植物檢疫制度등을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더우기 MMA와 CMA에 의한 수입가격의 이중적 형성으로 국내시장의 교란현상과 함께 소득분배의 외곡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내 농산물 가격의 안정화와 소득의 불균형 방지를 위해서 WTO규범 내에서 국영무역을 운용할 필요성도 있다.

본 논문은 이를 위해 WTO 농산물협정의 주요규정을 분석하고 국내농업여건에 적합한 수입대응방안을 수립하는데 정책적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서론

WTO체제는 농산물·지적재산권·서비스를 포함한 전 분야에 걸쳐 새로운 국제무역질서를 형성해 가고 있다. 수출입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는 철폐되고 있으며 관세율도 국제적인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 한국도 이미 완제품에 대해서는 8%의 단일 관세율로 가고 있고 농산물 분야도 관세화하여 관세율을 연차적으로 인하하고 있다. WTO 농산물관련법의 기본목표는 농산물 무역의 自由化幅 擴大와 이를 위해 수출입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들을 보다 강화된 국제규정 아래 규율하겠다는 것이다. 협상초기에는 기본적으로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사이의 다툼이

예상되었으나 실제적으로는 농산물 수출국 사이의 다툼이 대세를 이루었다. 그 결과 타결된 WTO농업협정문의 내용은 크게 세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바 첫째 예외없는 關稅化 措置를 통한 市場接近의 保障, 둘째 국내 보조금의 감축과 輸出補助金의 감축, 셋째 開途國 優待措置에 관련된 내용이다.

한마디로 WTO시대의 농산물 교역정책은 WTO체제의 특징을 최대한 감안함과 동시에 WTO의 개방메카니즘을 치대로 활용하는 교역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 대응 방안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국경보호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WTO농산물협정의 주요내용과 한국이 제출한 양허내용을 분석하고 수입관리적 측면에서 그 대응방안을 검토해보기로 한다.

II. WTO농산물협정 주요내용

2.1 市場接近(market access)分野

WTO 農産物協定에 있어 農産物에 대한 시장 접근방식은 원칙적으로 예외없는 관세화(Tariffication)에 의한 시장개방방식이고 국내외 價格差를 관세로 전환한 關稅相當值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특정 주요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화의 유예를 인정하는 대신 最小市場接近方式(MMA)을 취한다.¹⁾ 즉 농산물협정 제4조 제2항에는 본협정 제5조(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 및 부속서 5(제4조 2항에 관한 특별대우)에 제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관세로 전환이 요청된 조치에 대해 비관세조치를 유지 또는 재원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²⁾

여기에는 輸入數量規制, 可變 輸入賦課金, 最小 輸入價格, 자의적인 수입허가증발급, 國營貿易을 통한 비관세 조치, 수출자율규제, 웨이버등 비관세조치가 모두 해당된다.³⁾ 관세화에 해당되

는 품목들은 국내의 가격차를 관세로 전환하는데 이를 관세상당액(Tariff Equivalent; 이하 TE)라 하며 TE는 원칙적으로HS4 단위로 산출하되 일부 과채류의 경우 HS6 단위 또는 그 이상을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시장접근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각국의 관세인하를 규정했는데 관세인하는 1986년-1988년을 기준년도로 평균관세율을 1995-2000년 까지 36% 감축 하되 品目別 最小減縮率을 15%로 했다. 다만, 開途國의 경우는 1995-2004년 기간 동안 算術 平均 24%, 最小減縮幅을 10%로 했다. 그러나 당장 관세화하기 어려운 특정 농산물에 대해서는 特別待遇(special treatment)를 인정해서 그 관세화를 일정기간 猶豫하고 있는데 그 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식량안보 및 환경보전과 관련한 非交易的 關心(NTC)⁴⁾ 품목으로, ②수입량이 1986-1988년 기준 국내소비량의 3% 미만이고, ③1986년 이후 수출보조지급이 없으며, ④생산통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품목일 것 등이다. 그러나 특별대우 품목의 경우에도 MMA기회를 확대하여야 하는데 선진국의 경우는 이행초기연도에 국내소비량의 4%에 상응하는 市場接近機會를 설정하고 殘餘移行基幹동안 매년 0.8%씩 증가시켜 나가도록 했다.⁵⁾ 또한 추가적으로 개도국의 전통적 기초식량 1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화를 10년간 유예하고 최소시장접근 분량은 1995년에는

1) 최소시장접근(Minimum Market Access: 이하 MMA)을 기준연도에 수입 실적이 없거나 미미한 품목에 대한 시장접근보장으로서 기준연도의 연평균 국내소비량의 일정율이 현행관세율로 수입되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현행시장접근(Current Market Access: 이하 CMA)은 기존의 저율관세화에서 상당량의 수입이 있었던 품목에 대한 시장접근약속으로서 기준연도의 수입량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수출국에게 시장접근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품목이 고율의 TE에 의한 시장접근으로 변경될 경우 수입국의 국내가격이 올라 가고 수입국의 생산량이 늘어나 수출국들의 수출물량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2) 農業協定文 제4조 2항에는 “會員國들은 본 협정은 5조와 부속서 5에서 제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一般關稅로의 전환이 요청된 조치를 유지 또는 재원용하지 않을 것을 約束한다.”라고 되어있다.

3) 對外經濟政策研究院, 前掲書, 1994. 7, p.67.

4) NTC(Non-Trade Concern)는 식량안보자원 유희화방지관리에 의한 糶수조절효과등 농업의 의무효과를 일컫는 것으로 UR에서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에 의한 무역자유화가 될 경우 이같은 외부효과가 상실되므로 각국의 농업특성에 따라 중요품목의 일정한 생산유지와 수입제한이 필요하다는 한국, 일본, 캐나다, 스위스등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UR 타결에 따른 농축산물시장개방의 파급영향분석」, 1993, p.3>

5) 農業協定文 附屬書 5-1(e)

관련상품기준연도 국내소비의 1%에 1999년에는 기준연도 국내소비의 2%가 되도록 毎年同一率(equal annual installment)로 増量하고 2000년에는 기준연도 국내소비의 2%에 2004년까지는 기준연도 국내소비의 4%로 까지 매년 同一率로 増量토록 했다.⁶⁾ 한국의 쌀이 바로 이 조항에 해당하는데 이를 일본과 비교하여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목의 시장접근 기회의 크기에 따라서 수입량이 최근 3년간 수입량에 비하여 일정한 비율이상 증가하는 경우 당해년도에 부과하는 관세에 대하여 최대 1/3 수준을 추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⁸⁾ 그리고 자국통화로 환산된 CIF 가격을 기준으로 수입가격이 86년-88년 평균 참조가격 이하로 하락할 때는 그 가격 차이에 따라 최고 90%의 추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했다.⁹⁾ 그리

<표 1> UR 농산물협상중 쌀에 대한 특별대우내용

	최 종 협 정 안	일 본	한 국
유 혜 기 간	없음	6년	10년
이 행 기 간	6년 (단, 개도국은 10년)	유혜기간 만료 1년전 재협상	유혜기간 만료 1년전 재협상
평 균 감 축 륜	단순평균 (단, 개도국은 24%)	36 %	24 %
품목별 최저 감축율	15% (단, 개도국은 10%)	15 %	10 %
최 소 시 장 접 근	3 ~ 5 %	4 ~ 8 %	1~2% ('95 ~ '99) 2 ~ 4% (2,000~2004)

자료 : 농수산부

그리고 이 품목에 대한 특별취급의 연장여부에 대해서는 이행기간 초기부터 말까지 협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 품목에 대한 양해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관세화 품목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며 再協商 결과 猶豫期間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讓許를 제공하지 않으면 안된다.⁷⁾

마지막으로 관세화한 농산물중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크게 하락한 경우 GATT 1994의 제2조 1항(b)에도 불구하고 特別緊急輸入制限措置(special safe guard)가 허용되어 추가적인 관세의 부과를 허용토록 했다. 즉 해당품

나 特別緊急輸入制限措置를 취한 회원국은 그 조치를 명료한 방법으로(in a transparent manner) 시행해야 하므로 조치시행 10일이내에 서면으로 그 내용과 관련자료를 통지 하도록 했다. 또한 緊急措置를 취하는 당사국은 그러한 追加關稅賦課措置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국에게 협의할 기회를 반드시 부여하도록 했다.¹⁰⁾ 그리고 수량의 증가에 따른 추가관세도 당해년도 말까지만 가능하도록 했다.¹¹⁾

이상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시장접근 분야에

6) 農業協定文 附屬書 5-Section B.7
7) 農業協定文 附屬書 5-Section B.8. 9.

8) 農業協定文 第5條 第1項 및 4項.
9) 農業協定文 第5條 1(b)項 및 5項
10) 農業協定文 第5條 7項
11) 농업협정문 제5조 4항.

서는 “예외없는 관세화”가 기본원칙으로 받아들여짐으로써 모든 국가의 非關稅 障壁이 사라지고 <표4-17>에서와 같이 각국의 讓許比率이 100%로 상승되었다. 그러나 관세화 예외조치를 주장하던 한국, 일본, 스위스, 北歐등의 입장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으며 선진국에 비해 開途國의 讓許比率이 월등하게 대폭적으로 책정되었다.

몇가지 고려할 점이 있다. 즉 기준년의 세계 시장가격과 국내가격의 자료는 임의적으로 사용하여 관세상당치를 과대계산하여 非關稅障壁에 의한 보호효과를 증가하도록 할 수가 있다. 또한 앞에서도 살펴 본 바와 같이 관세 및 관세상당치의 감축의 기준을 단순평균 36%(개도국 24%)로 제시했기 때문에 오히려 민감품목에 대

<표 2> 農産物 讓許比率의 變化

國家群	關稅品目數	總輸入額 (10억 \$)	讓許比率 (輸入額基準, %)		讓許比率 (輸入額基準, %)	
			WTO 前	WTO 後	WTO 前	WTO 後
先進國	14,976	84.2	58	100	81	100
開途國	23,615	30.4	18	100	25	100
市場經濟轉換國	2,841	4.8	51	100	54	100

* 開途國은 26개국(93개 開途國 數出額 89%, 品目數의 30% 차지) 기준
 資料 : GATT, News of the Uruguay Round of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 Marrakesh 94, April 1994

농산물분야에 關稅化가 진행될 경우 세계각국의 농업은 비교우위원칙에 따른 국제분업이 심화되고 貿易量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화에 따른 긍정적인 측면은 첫째 각국의 輸入政策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둘째 EU의 可變賦課金 制度和 같은 회색지대(Grey-Area)조치가 제거되며 셋째 관세의 양허와 감축이 용이해져 輸出入國 모두가 세계시장의 변화에 경제논리에 입각하여 적응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국내 농업기반이 취약한 농산물 수입국의 경우 市場開放에 따른 농가의 피해가 극심하여 사회적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가격의 불안정도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¹²⁾

한편 關稅化措置의 전환과정과 이행과정에도

한 관세인하가 지연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關稅化措置의 이행과정상 수출국에게 최소한의 수출물량을 보장하기 위한 MMA, CMA제도로 인하여 수입국내에서는 이중가격형성과 막대한 수입차익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예상된다.

특히 관세화과정에서 수입이 급증할 경우 관세인상을 허용하는 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Special Safeguard)는 기준가격과 기준물량을 상회할 경우 예외적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輸入制限措置가 이루어짐으로 관세화 이행의 부작용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수입규제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 것이다.¹³⁾

12) 世界市場價格은 다소 안정화될 것이나 비관세장벽으로 수입제한되던 수입국의 농산물가격은 관세화 이후 換率의 변동등 외부적 영향이 그대로 국내시장에 전가되어 크게 不安定해 질 것이다.

13) 이재옥 외, 前掲書, 1994. 11., pp. 160-162.

2.2 國內 補助(Domestic support)¹⁴⁾ 및 輸出補助(Export Subsidy)

다음으로 80년대 가장 격렬했던 농산물 무역 마찰은 미국과 EC사이에 벌어졌는데 그 쟁점요소가 補助金 문제였다. 이들 국가들은 농업에 대한 보조금을 증대시켜 가면서 世界農産物 市場占有率을 높이기 위해 경쟁해 왔는데 그 결과 세계 농산물교역의 외국을 심화시켜 貿易戰爭을 야기했던 것이다.

GATT에 따르면 86년-88년 기간 평균농산물에 대한 국내보조금의 규모는 선진국이 1,500억 달러, 개도국이 190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의 수출보조금 규모는 86-90년 기간 중 210억 달러로 선진국 농산물 수출액의 약 2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¹⁵⁾ 따라서 UR農産物協商에서는 農産物의 補助金 減縮이 주 쟁점중 하나가 된 것이다.

WTO農協定文은 제 6조와 제 7조에서 국내보조의 감축약속과 국내보조의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시행기준을 협정의 제 2부속서에 위임하여 놓았다. 여기서 국내보조는 許容對象補助와 減縮對象補助로 구분하고 감축대상보조는 이행기간에 일정비율을 감축하도록 했다. 협정문상으로 볼 때 감축대상이 되는 국내보조는 무역왜곡효과(trade distortion effects)를 갖거나 생산에 미치는 효과(effects on production)를 갖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은 소비자부담

의 보조이거나 생산자에 대한 가격지지(price support)효과를 갖는 보조가 감축대상이 된다는 의미이다.¹⁶⁾ 허용대상 국내보조(부속서2)를 제외한 모든 국내 보조의 감축은 全體農業補助總量指標(total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이하 total AMS)를 기준으로 하여 1986-1988년을 기준년도로 하고 20%를 6년 사이에 (1995년-2000년) 감축하도록 했으며 개도국은 10년간 (1995-2004년) 13.3%감축하되 단 最貧國은 그 이행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¹⁷⁾

이 total AMS에는 市場價格支持(market price support) 減縮對象 直接補助(non-exempt direct payments), 他減縮對象支援(other non-exempt policies)이 포함된다. 또한 정부에서 직접지불한 지원금액뿐만 아니라 국경보호조치로 인한 보호효과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AMS의 감축이 국내 농업보조금의 감축없이 국경조치의 완화로도 가능하게 되었다.¹⁸⁾ 그리고 감축대상이 면제되는 국내보조정책의 기본조건과 개별정책별 세부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표 3>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許容對象補助基準은 생산자에 대한 價格支持 효과가 없어야 하며, 이 보조가 소비자 부담이 아닌 정부의 공공재정계획에 의해 제공되는 보조여야 한다는 것인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¹⁹⁾

14) WTO농업협정문에서는 국내보조에 대해 'support'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상품에 대한 'subsidy'와는 구분하려는 의도를 보이는데 이는 과거 GATT 제16조 3항의 해석에 있어서 상품에 대한 보조금의 개념이 모호해 사실상 농산물에 대한 보조금 을 허용하는 의미로 차용되었던 점을 감안한 결과로 보인다. <법무부, 前揭書, pp.84-85.>

1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前揭書, 1994, p.66.

16) 이 경우 우리의 양곡관리법에 의한 정부수매제도는 수확기에 산지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수매하고 안정기에 시중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방출하는 이중 곡가제이므로 감축대상이 된다. <법무부, 前揭書, p.86.>

17) 國內補助의 감축수단으로서 최종 채택된 Total AMS는 品目別, 政策別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므로 단결초안보다 국내농업정책수행과 선택상의 신축성이 크게 확보되었다. <農協定文 附屬書3(國內補助:AMS의 計算)參照>

18) 이재옥 외, 上揭書, p.163.

19) 農協定文 附屬書 2-1

〈표 3〉 UR 농업협정에서의 국내 보조정책의 분류

감축대상정책		I. 시장가격지지 II. 감축대상 직접지불 III. 기타 감축대상 보조
허용대상정책	정부서비스	I. 일반서비스 : 연구 방제, 방역 등 병충해예방 교육 및 훈련지도, 홍보, 검사 유통촉진, 하부구조개선 II. 국내 식량구호 III.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허용대상직접지불	I. 생산 중립적 소득지지 II. 소득보험 및 소득안정화 시책 III. 재해복구 및 구호 IV. 은퇴 및 탈농지원 V. 휴경보상 VI. 투자보조를 통한 구조조정 지원 VII. 환경보존 관련 지원 VIII. 낙후지역개발 지원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축산물시장 개방의 파급 영향 분석 1993. p.9.

① 政府提供서비스: 연구사업, 병충해방제, 교육훈련, 지도 및 자문, 유통 및 판매촉진, 하부구조개선지원, 식량안보를 위한 공공재고보유, 국내식량원조.²⁰⁾

② 生産者에 대한 直接支拂: 생산과 관련없는 소득보조(Decoupled Income Support), 소득보험 및 최저소득보장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재해구호지원, 脫農補償, 休耕補償, 투자지원을 통한 구조조정, 환경보전지원, 지역개발보조.²¹⁾

이와 같이 감축의무에서 제외되는 허용대상정책에 대해서는 예시적으로 그 대상을 열거하는 동시에 모든 허용대상정책의 일반적인 두가지 허용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개별허용정책들이 이들 일반조건을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어서 그 이행과정에서 이해 당사국간에 규정해석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협상결과 미국의 부족불제도(Deficiency Payments)와 EU의 직접보상을 감축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직접적인 가격지지행위를 UR협상에서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했다고 볼 수가 있다.²²⁾ 이외에 현행 total AMS를 계산하는데 포함되지 않는 最小許容補助比率(De Minimis)를 설정하고 있는데 일반 회원국의 경우 品目特定的 AMS가 해당품목 생산액의 5% 미만인 경우 이거나 品目不特定 AMS가 농업총생산액의 5% 미만일 경우 AMS 계산에서 제외되며 개도국의 경우 10%를 最小許容補助比率로 했다.²³⁾

한편 수출농산물에 대해 지급되는 수출보조금은 1986-90년을 기준으로 1995년 부터 6년간 36%, 수출물량은 22%씩 감축하도록 했다. 단 개도국의 경우 이행기간은 1995-2004년 까지 10년간이며 감축폭은 일반회원국의 % 수준인 24%와 14%씩이다.²⁴⁾ 減縮對象補助金은 다음과

22) 미국의 부족불제도는 生産統制를 조건으로 시행한다고는 하지만 생산을 크게 촉발시키는 가격지지에 해당하므로 減縮對象補助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23) 農業協定文 第6條 4項

24) 「개혁프로그램하의 구속력있는 약속의 확립을 위한 양식」, 제11조 및 제15조 참조.

20) 農業協定文 附屬書 2, 3, 4.

21) 農業協定文 附屬書 2-5, 6, 7, 8, 9, 10, 11, 12.

같다.²⁵⁾

- ① 수출이행을 조건으로한 정부 또는 정부대행기관의 직접보조.
- ② 정부 및 정부대행기관에 의한 低價輸出.
- ③ 수출농산물에 대한 流通費用支援.
- ④ 수출농산물에 대한 國內運送費 支援.
- ⑤ 수출상품의 原料農産物에 대한 補助金.

이외에도 감축대상이 아닌 수출보조가 수출보조 감축이행 약속을 우회하는 결과를 초래하거나 그러한 우려를 초래하도록 운용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즉 輸出信用, 輸出信用保證, 輸出保證등의 우회적 지급은 금해야 하며 국제식량원조도 농산물의 상업적 수출과 연계되지 않아야 하고 FAO의 「剩餘農産物 處分原則과 協議義務」를 준수하고, 최대한 양도(Grant)의 형태로 제공되되 86년 食糧援助協約 제4조에 명시된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되도록 규정했다.²⁶⁾

UR농산물협상이 대두된 중요한 배경중의 하나가 농산물 수출국간의 과도한 수출보조금의 경쟁적인 지원으로 인한 세계 농산물시장의 극심한 왜곡현상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와 같은 수준의 수출보조금의 감축은 기대에 못미치는 미흡한 수준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재고 농산물에 대해서는 감축대상에서 제외하고 수출보조금의 감축시에도 대상농산물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허용수출보조금의 한계내에서 품목의 구성을 달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작 농산물에 대한 수출보조가 가능하도록 한 것은 수출보조금 감축협상의 한계라 할 수가 있다.

25) 農業協定文 第9條 1項.

26) 농업협정문 제10조.

이상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WTO農産物協定文은 농업에 대한 일반적 투자 보조등 개도국의 직·간접 지원조치를 감축의무에서 제외시키고 수출농산물에 대한 流通費用支援과 국내수송비 지원에 대한 수출보조감축의무를 면제해 줌으로써 개도국의 입장을 어느 정도 반영한 측면도 있으나 許容對象政策의 일반적 기준이 財政支出 일 것을 강조하여 결과적으로 재정이 풍부한 선진국에 유리하도록 작성된 면이 있다. 또한 수출보조의 감축이 국내보조나 관세감축과는 달리 1986-90년을 기준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무역왜곡효과가 더 큰 수출보조부분의 감축이 상대적으로 미약했음을 알 수가 있다.

2.3 開途國 優待

開途國의 경우 앞서도 본 바와 같이 선진국에 비해 보다 낮은 감축율과 보다 긴 이행기간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關稅引下率, 國內補助減縮率, 輸出補助減縮率등을 선진국의 1/2수준까지, 이행기간은 10년까지(선진국은 6년), 最小 許容補助比率도 10%까지(선진국은 5%) 허용했다. 또한 開途國에서의 農業開發을 촉진시키기 위한 직접적 지원 조치는 개도국 개발정책의 일환이라는 사실을 감안하여 개도국의 ④농업에 대한 일반적인 投資補助 ⑤麻藥作物作木轉換促進 ⑥영세농보조와 농업투입제 보조(제6조 2항) 및 ④유통 수송비 보조에 대한 減縮義務도 免除했다.²⁷⁾ 또한 개도국의 特別待遇(Special Treatment)품목 중 전통적 식품으로 매우 중요한 1개 농산물은 이행초

27) 農業協定文 第9條 4項

기년도에 1%에 상응하는 시장접근기회를 허용하고 5차년도인 '99년에 2%로 매년 0.25% 증량시키고 6차년도인 2000년 부터 최종년도(2004)까지는 매년 0.5% 증량하여 4%로 증가시킬 수 있도록 했다.(부속서 5-B. 7) 앞에서도 살펴 보았듯이 한국의 쌀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그 밖에 WTO농산물협정은 WTO산하에 농업위원회(Committee on Agriculture)를 설치하여 농업개혁과 농산물의 貿易自由化를 점검하도록 하며²⁸⁾, 이행계획서제출의무를 규정하고 농업개혁을 지속하기 위해 약속이행종료(선진국의 경우 2000년, 개도국의 경우 2004년) 1년전에 협상을 재개하도록 했다.²⁹⁾ 그리고 輸出禁止와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회원국이 GATT 1994의 제9조 2항(a)에 의거하여 식량에 대한 輸出禁止 또는 수출제한조치를 실시하고자하는 국가는 그와 같은 조치가 수입국의 식량안보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야 하고 그러한 輸出禁止 또는 제한을 하기전에 조치의 성격 및 기간등의 정보를 농업위원회에 미리 서면으로 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해관계에 있는 輸入國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들 국가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끝으로 農産物協定하의 분쟁해결을 위한 협의와 절차는 GATT 1994 제22조, 제23조와 이를 자세히 설명한 「紛爭解決節次에 대한 규칙과 절차에 관한 기본 양해(Understandings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를 따르도록 규정했다.³⁰⁾

28) 農業協定文 第17條, 18條

29) 農業協定文 第 20條

30) 農業協定文 第19條

III. 한국의 양허내용과 대응방안

3.1 양허내용

WTO농산물 협정은 예외없는 관세화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³¹⁾. 한국은 이러한 포괄적 관세화 원칙에 기초하여 쌀을 제외한 모든 농축산물을 개방하기로 하고 품목별 자유화 일정에 합의하였다. 다만 農産物協定에 있어서 한국은 開途國으로 分類됨으로서 關稅減縮率이나 履行年度 그리고 특히 개별국의 特別取扱品目으로서의 쌀 開放 問題등에서 여타 會員國에 비해서는 비교적 유리한 조건을 確保하였다. 또 農業構造調整에 필요한 國內補助政策이 許容됨으로써 對策 마련에 보다 넓은 재량폭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TO體制下에서 韓國農業은 취약한 生産基盤을 갖고서 치열한 國際競爭에 노출됨으로써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될 것이다.

본래 한국은 브릿셀각료회의(1990) 직전 국내 여론 수렴을 거쳐 관세화할 수 없는 소위 「NTC 15개 품목」을 선정하고 1992년 4월 이행계획서상에 공란처리함으로써 관세화 불가 의사를 표명하였다³²⁾. 그러나 협상 막바지에 시장개방의

31) WTO 농산물협정 제4조 2항에 따르면 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Special Safeguard)나 부속서 5에 제시된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관세로 요청된 조치에 대하여 비관세 조치를 유지 또는 재원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2) NTC(Non-Trade Concerns)는 비교역적 고려사항으로 번역되는데 농산물 무역을 통해서는 이룰수 없는 농업의 고유한 역할을 의미하며 식량안보, 환경보전, 고용유지, 지역개발 등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 한편 한국은 1990년10월30일 가트에 제출한 오퍼리스트에 NTC 대상 15개 품목으로 다음 품목을 선정했다. 쌀, 보리, 옥수수, 콩, 고추, 마늘, 양파, 참깨, 감자, 고구마,

대원칙인 「포괄적 관세화(Comprehensive Tarification)」의 예외 불인정이라는 대세에 밀려 절박한 상황에서 중전의 주장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본래부터 이러한 한국의 오퍼안은 국내 농업의 실질적 자유화계획을 밝힌다는 점에서 획기적이었다만 여타국의 오퍼와 비교할때는 개방의 수준과 폭이 미흡했다는 비판을 안고

있었다. 즉 한국은 NTC에 대한 과도한 기대로 애초부터 너무 많은 품목에 대해 NTC 를 적용 하였으며 국경조치에 대한 유예기간 또한 장기간 설정하여 가급적 늦게 개방하고 보조금을 적게 철폐하는 길을 택했는데 브뤼셀 회의에서 이러한 한국의 입장에 심각한 비판이 가해지고 심지어는 농산물협상을 결렬시킨 나라중의 하나라

〈표 4〉 우리나라 農産物分野 C\S의 主要内容

구분	관세양허			최소시장접근 약속물량(톤) ¹⁾		국영무역 구과금
	현행	1995	2004	초기연도	최종연도 ²⁾	
쌀	5	-	-	51,307	205,228	0
보리(쌀보리)	20	333(또는 401원/kg)	299.7(또는 361원/kg)	14,150	23,582	0
대두	5	541(또는 1,062원/kg)	487(또는 956원/kg)	1,032,152	1,032,152	0
옥수수 (사료용)	3	365	328	6,102,100	6,102,100	X
감자	30	338	304	11,286	18,810	0
고구마	20	428(또는 375원/kg)	385(또는 338원/kg)	11,121	18,535	0
쇠고기	20	43.6	40	123,000 ³⁾	225,000 ³⁾	0
돼지고기 (냉동)	25	37	25	21,930 ³⁾	18,275 ³⁾	X
닭고기	20	35	20	7,700 ³⁾	6,500 ³⁾	X
유제품 (탈지분유)	20	220	176	621	1,034	X
고추	50	300(또는 6,900원/kg)	270(또는 6,210원/kg)	4,311	7,185	0
마늘	50	400(또는 2,000원/kg)	360(또는 180원/kg)	8,680	14,467	0
양파	50	150(또는 200원/kg)	135(또는 180원/kg)	12,369	20,645	0
오렌지	50	99	50	15,000 ³⁾	57,017 ³⁾	0
참깨	40	700(또는 7,400원/kg)	630(또는 6,600원/kg)	6,731	6,731	

주 : 1) 최소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는 현행 관세율이 적용됨
 2) 쇠고기는 2000년, 돼지고기, 닭고기는 1997년 6월, 나머지는 2004년임.
 3) 이는 수입쿼타량임.
 자료 : 농림수산부, 『UR 협상과 관련한 대책 및 당면농정 현황보고』
 대우경제연구소, 『우루과이라운드와 한국경제』

김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 및 유제품, 이것이
 다. (김기홍, 전계서, 1993년 pp.110~112)

는 비판을 듣게된 것이다.³³⁾

더우기 농산물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수출보조감축문제를 둘러 싸고 미국과 EU간의 블레이 하우스협정의 재해석과 수정문제가 합의에 도달하고 일본과 캐나다가 관세화수용의 방향으로 입장을 변경한 상황에서 관세화 예외를 주장하는 한국의 입장은 매우 어려울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관세화 불가원칙에서 후퇴하는 대신 관세화 유예기간을 최대한 연장하고 최소 시장접근의 허용도 최소화 방향으로 협상전략을 수정하지 않을수 없게 된 것이다³⁴⁾.

당시 한국은 전체 농축산물 1312개 품목 가운데 1092개 품목은 이미 수입자유화 했다. 나머지 수입제한품목은 <표4 >에서 보는바와같이 통합공고 125개품목과 수출입공고 95개 품목으로서 이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세화나 최소시장접근 또는 현행시장접근을 통해서 시장개방을 해야한다.³⁵⁾

主要 農産物 開放計劃은 <표 5>와 같다. 우선 쌀(HS 10단위로는 14개 품목)에 대해서는 傳統的으로 米作에 대한 韓國民의 깊은 國民情緒와 農村經濟에서 차지하는 比重등을 감안하여 관세화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대신 최소시장접근에 의한 市場開放만을 허용하는 特別待遇(Special Treatment)를 認定받았다. 즉 1995-2004년까지 10년간 關稅化를 猶豫하고 10년차에 다시 關稅化 猶豫期間의 延長與否를 再協商하기로 한 것이다. 단 유예기간 중에도 MMA는 허용하되 그 물량은 履行 初期年度(1995년)에 1%(51,307t)에서 시작하여 5차년도(1999년)에 2%(102,614t)로 매년 0.25%씩 増量시키고 6차년도(2000년)부터 最終年度인 2004년까지는 每年 0.54%씩 増量하여 2%에서 4%까지 輸入量을 늘리기로 한 것이다.<표 30 참조>

<표 5> C/S상의 농축산물 수입자유화 계획

구 분		자유화 년도					
		'94	'95	'96	'97	2001	2004
전 체 농 축 산 물		1,312	1,312	1,312	1,312	1,312	1,312
자 유 화 대 상 품 목	통합공고	125	111	-	-	-	-
	- 쌀	14	-	-	-	-	14
	- 기타(TE품목)	111	11	-	-	8	
	수출입공고(BOP품목)	95	43	14	30	8	
계		220	154	14	30		
자 유 화 품 목 (누 계)		1,092	1,246	1,260	1,290	1,298	1,298
잔 존 수 입 제 한 품 목		220	66	52	22	14	14

자료 : 대한민국, 「UR 농산물협상 이행계획서」, 1994. 3.

33) 김기홍, 상계서, p.112.

34) 이재욱외, 전계서, 1994. 11. pp.166~167.

35) 강봉순, 전계서, 95.6., p.10.

〈표.30〉 韓國의 쌀 開放 計劃

최소시장 접근에 의한 연도별 쌀 수입 비율 및 수입량 단위 : 수입비율 : % 수입량 : 천톤						4.0(%)	
				2.0	154	205 (천톤)	
		1.75					
		1.25					
	1.0		90	103			
	51	64					
	1995	1996	1998	2000	2002	2004	

이에 따라 정부는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쌀을 현미 위주로 9~10월께 수입하기로 했다.³⁶⁾

쌀이외의 14개 主要 農産物중 보리, 옥수수, 콩, 감자, 고구마등 5개 品目은 國內外 價格差만큼을 관세화하여 '88-'90년 관세상당치를 기준으로 10% 감축 양허하였으며 그중에서 그동안 수입이 없거나 미미했던 보리, 감자, 고구마등은 국내소비량의 3-5%의 최소시장접근을 허용했다. 輸入이 消費量의 3%以上되는 옥수수, 대두등 品目은 現行市場接近을 허용했다.

나머지 9개 品目은 國際收支條項 關聯品目으로서 이미 '97년 7월까지 現行關稅로 自由化하기로 約束했던 品目들인데 既存의 양허세율보다 높게 설정하거나 자유화 시기를 다소 延長시켰다. 본래 이들 「BOP품목」은 지난 1989년 10

36) 수입물량은 지난1988~1990년의 백미 기준 평균 식량용 수요량의 1%인 5만1천t(35만섬)인데 장기간 비축등을 고려하여 현미로 수입하기로 결정했으므로 5만7천t(39만섬)이 된다. 수입방식은 조달청이 국영무역형태로 국제입찰에 부쳐 최저가 입찰로 수입하며 국내에 도착한 이후 농림수산부가 직접관리하여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음으로써 농민의 피해를 막기로 했다. 〈한국경제 1면, 1995.5.10〉

월 한국이 BOP조항을 졸업함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1990년 부터 자유화했어야 하는 품목이었다. 이에 따라 가트국제수지위원회와 1997년 7월까지 2차례의 예시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자유화하거나 또는 가트조항에 일치시킨다는데 합의를 하여 1991년 3월 제1차 자유화 예시계획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들 품목은 UR협상이 아니라도 1997년 7월까지 완전자유화해야 할 처지에 있었다. 그러나 한국은 “가트규정에 일치시킨다”는 가트국제수지위원회와의 합의에 따라 UR협상결과도 새로운 가트규정인 만큼 이에 근거하여 「BOP 품목」의 관세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놓고 미국등 주요 이해당사국들과 협상타결직전까지 논쟁을 벌였다³⁷⁾. 그 결과 최종적으로 관세화와 동일한 효과를 가지면서 형식적으로는 관세화가 아닌 대안으로서 상한관세설정(Ceiling Binding)을 하게 된 것이다³⁸⁾.

37) 이재옥외,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백서, 농경연, 1994.11.pp.168~169

38) UR농산물협상에서 기본적으로 채택된 관세화는 수입

즉 관세를 새롭게 양허하면서 양허수준은 높이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그러나 상한관세설정은 미양허품목에 한하므로 고추, 마늘, 양파, 참깨 및 일부 유제품등 미국, 호주, 캐나다등 주요 이해 당사국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품목들은 상한관세설정으로 수입개방하기로 합의하였지만 이미 가트에 세율이 양허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일부 유제품과 감귤등에 대해서는 이해당사국의 주장을 어느 정도 수용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쇠고기는 3년 더 연장하여 2000년 까지 BOP에 의한 輸入制限措置를 維持하고 2001년에 완전 자유화하되 그 기간동안의 수입쿼터량은 1995년 123천톤에서 2000년 225천톤으로 증량했다. 단 양허관세는 현행 20%에서 43.6%로 상승했다.

돼지고기, 닭고기, 감귤 및 오렌지 주스는 '95-97.7까지 수입쿼터에 의한 輸入制限을 유지하되 쿼터물량을 擴大하고 97년 7월 부터는 양허세율을 상승하여 자유화시켰다. 고추, 마늘, 양파, 참깨는 95년 부터 自由化하되 <표 29>에서와 같이 관세율을 고추는 300%, 마늘은 400%, 참깨는 700%등 대폭 上向調整하여 關稅化에 準하여 개방했다. 酪農製品 중 加工치즈, 유아용 調製粉乳등 4개 品目은 1995년 1월부터 實行稅率로 자유화하고 乳狀粉末등은 '95년 부터 自由化하되 履行期間동안 輸入쿼터를 설정하여 超過物量에 대해서는 關稅率을 現行 20%에서 99%

로 상승했다. 기타 BOP품중 사과, 포도주스, 과즙음료등은 '95년 부터 自由化하고 포도, 사과주스는 '96년 1월 부터 자유화하기로 했다. 이러한 협상결과는 관세화라는 UR협정문의 원칙에도 못미치는 결과로서 한국이 쌀시장보호에만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다른 품목들에서 너무 많은 양보를 허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農産物協商에서 한국이 開途國으로 分類됨으로서 補助金 減縮에 관한 諸般 義務에 있어서 다소 유리한 점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國內農業 補助金이 대부분 減縮對象이 됨으로써 既存 支援政策의 調整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秋穀收買制度나 農家에 대한 低利融資 그리고 農業機械化 支援등이 減縮補助對象이 됨으로서 效率的인 減縮履行 計劃의 樹立이 요구되고 있다.

國內補助金の 경우 減縮對象은 <표 7>에서와 같이 最少 許容補助 水準을 넘는 쌀, 보리, 콩, 옥수수, 유채등인데 이들 품목은 1995년-2004년에 걸쳐 13.3%를 減縮해야 할 것이다. 다만 포도, 누에고치, 우유에 대한 補助額은 각 품목별 生産額의 10%이하이며 營農, 養畜資金 利差 補填, 肥料販賣 差額補填등은 각각 農業 總生産額의 10%이하로서 減縮義務가 免除이므로 影響은 미미할 것이다.

輸出補助分野는 한국의 경우 該當品目이 없으므로 거의 關聯이 없다. <표 32>에서 보듯이 한국은 輸出 補助金과 關連해서 減縮對象이 될 만한 것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한편 UR 農業分野 協商過程에서 協商 參加國은 國家別 履行計劃書(C/S)를 提出토록 하여 한국은 1992년 4월과 UR 협정이 타결될 당시인 1993년 12월 이행계획서를 GATT에 제출하였다. 그후 1994년 3월 11일 그 동안의 C/S에서

제한조치를 철폐하는 대신 국내외 가격차에 해당하는 관세상당치(TE)나 상한양허관세(CB: Ceileng Binding)를 포함한 양허관세 국내의 특수한 목적으로 일정물량에 대해 부과하는 저율의 할당관세 그리고 특별 긴급관세 등의 3중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양허관세는 기존수입자유화 품목의 일반양허관세, 수입제한조치를 철폐하는 대신 국내외 가격차에 해당하는 TE 및 CB, 그리고 시장접근물량에 부과하는 양허관세를포함한 C/S 상 양허관세로서 개방체제하의 기본관세 체계를 이룬다. <강봉순, 전게서, 1995.6. pp12~13>

〈표 6〉 감축대상 보조액

(단위 : 억원)

	쌀	보리	콩	옥수수	유채	합계
보조금 총생산액비중	15,684 24.8%	523 17.4%	729 34.1%	226 79.9%	24 53.3%	17,186

자료 : 농수산부

언급하지 않았던 國營貿易, 從量制導入, 개방품목의 관세인상등을 追加하였는데 1994년 3월 17일-3월 25일 4차에 걸친 檢證過程에서 主要農産物 輸出國들로부터 異議가 제기되어 國營무역 품목은 118개에서 97개 품목으로 종량제 대상 품목은 97개에서 63개 품목으로 축소되었고 관세감축률도 일부 조정시켰다.³⁹⁾ 그 결과 最終

確定된 이행계획서는 당초의 이행계획서에 비해 385개 품목의 관세가 더 낮아졌고 바나나, 오렌지, 사과, 배, 파인애플등 34개 품목의 從量稅 賦課 방침이 철회되었으며 國營貿易을 통한 賦課金 對象品目도 돼지고기, 닭고기, 전지분유, 참기름, 밤, 누에고치등을 포함해서 26개 品目이 除外되었다. 이와 같은 추가양보나 수정(Minor

〈표 7〉 농산물 및 공산품의 수출지원제도 비교

구분	공 산 품	농 산 물
수출금융	- 수출금액의 80% 지원 - 융자기간 : 90% - 이율 : 연10%	- 공산품과 동일한 조건이나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식품 등 일부만 활용
농수산물 수출 준비자금	- 해당 사항 없음	- 지원품목 : 잠견 등 17개 품목 - 융자기간 : 3~9개월 - 이율 : 연 10% - 품목한정, 절차복잡 등으로 활용도 극히 저조
특별지원자금	- 종류 : 중소기업 특별자금 등 - 품목 : 전품목 지원 - 용도 : 운전자금, 시설자금 - 기간 : 2~5년 - 이율 : 연5~10%	- 종류 : 1개(농안기금 중 수출촉진) - 일부품목(취)만 지원 - 용도 : 수출용 수집자금 - 기간 : 1년 이내 - 이율 : 연10%
제도적지원	- 유망중소기업 발굴육성 - 금융 및 세제지원 - 중견수출기업 발굴육성 - 수출공단조성 등 - 금융 및 세제지원	- 해당 사항 없음
시장개척지원	- 사절단 파견 및 지원 - 각종 박람회 개최지원	- 해당 사항 미미함 - 해당 사항 미미함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UR 이후 농산물 무역정책의 방향>, 1993.

39) 농림수산부는 농축산물시장접근물량을 관리하기 위해 농림수산물고시제 94-76호로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을 1994년 12월 21일자로 고시하였는데 국영무역, 수입 관공매, 실수요자 추천등의 수입관리방식중 국영무역대 상품목수는 처음 97개에서 79개로 축소시켰다.

Adjustments)은 보다 심층적인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협상과정에 임하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3.2 수입관리적 측면에서의 대응방안

WTO체제하에서 우리의 농산물 수입정책은 관세 및 관세상당액의 감축이행이라는 제약으로 사실상 농산물 수입제한정책의 탄력적 활용의 폭은 매우 좁다. 과거 가트체제에서와 같은 국내농업보호를 위한 수입제한 위주의 무역정책은 불가능하므로 우리의 농산물 국경보호정책은 국내농업여건을 감안한 효율적인 관세인하 및 관세상당액의 감축방향과 WTO규범을 적극 활용하여 관세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설정수립되어야 한다. 즉 효과적인 수입관리측면에서 국경에서 운용해야 할 제도가 무엇인가하는 관점에서 대응무역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농축산물의 수입관리와 관련된 정책의 목표는 농어민소득, 농수산물의 수급과 가격안정, 관련산업의 보호육성, 수혜의 공평성, 통상마찰의 최소화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목표사이에는 상호보완적 관계도 있을 수 있지만 대립되는 관계도 있을 수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정책목표간에 적절한 조정이 요구되며 어떤 경우에는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테면 WTO체제 출범에 따른 농업부문의 개방은 자발적인 개방이라기 보다는 타부문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하게 개방되는 것이므로 무엇보다도 농어민 소득피해의 극소화에 높은 우선 순위가 매겨져야 할 것이며 다음으로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농축산물의 수급과 가격안정, 그리고 시장경제가 제대로 지탱되게 하는 공평성등도 중요시 여겨져야 한다. 또한 WTO체제하에서 통상마찰의 극소화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정책은 WTO규범상으로도 적법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

다. 또한 정책목표와 이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 간에도 상충적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이를 테면 사료 및 가공농산물의 원료들이거나 국내의 흉작에 대처하기 위한 수급조절용으로 저율관세가 요망되는 품목들의 경우이다. 이들 품목들을 국산원료사용으로 국민소득보호를 위해 높은 TE나 CB를 책정하고 초과물량에 대해 SSG까지 설치할 경우 CMA나 MMA등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하는 원료농산물에 대해서는 고율관세가 부과되고 가공된 관련제품은 저율관세로 자유화되어 역관세문제가 발생되어 해당 가공산업의 산업피해가 야기될 뿐만 아니라 생산 농어민에게도 그 혜택은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피해를 입힐 수가 있다. 왜냐 하면 국내 가공제품의 원가 상승으로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물가상승을 유발하여 소비자잉여가 감소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이들 원료농산물들을 시장접근 물량의 증량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공급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비싼 국내 농산물의 사용을 기피하게 되어 농가소득감소와 생산감소를 촉진시키고 국산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산업을 위축시킴과 동시에 수입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산업을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또한 TE는 기본적으로 수입개방체제하에서 장기적인 국내가격은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여 생산자, 소비자, 무역중사자들에게 예측가능한 지표 역할을 하는데 시장접근물량을 증량할 경우 TE수준이하에서 국내가격이 유지되어 농가소득보호를 위한 TE의 기능이 소멸될 수도 있다.⁴⁰⁾ 따라서 정책목표와 그 수단간, 그리고 정책수단간의 균형과 조화를 위하여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 구체적 방안을

40) 강봉순, 전거서, pp.56-57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2.1 특별수입제한조치(SSG: Special Safeguard)

WTO농산물협정에는 관세화 이후의 갑작스런 수입의 증가 발생시 그 보완장치로서 일반관세로 전환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특별수입제한조치(Special Safeguard; 이하 SSG)를 허용하고 있다. SSG는 UR에서 TE로 수입자유화된 품목 가운데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한 경우에 대해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관세 상당치에 자동적으로 추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비교적 농업보호의 적시성을 확보할 수 있다. SSG를 국내법형태로 수용한 것이 특별긴급관세제도인데 이것은 물량기준과 가격기준에 따라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종류가 있다.

당품목의 시장접근 기회의 크기에 따라서 수입량이 최근 3년간 수입량에 비해서 일정비율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당해년도에 부과되는 관세에 대하여 최대 1/3 수준을 추가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자국 통화로 환산된 CIF가격을 기준으로 해당품목의 수입가격이 1986-1988년 평균참조가격 보다 10%를 초과하는 경우 가격변동폭에 따라 차등하여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같이 SSG는 과거 가트 제19조의 긴급수입제한제도(Safeguard; 이하 SG)와는 상이한 개념으로 과거 SG가 보상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현재 WTO체제하에서의 SSG는 보상의무 없이 관세인상등의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어 SSG의 활용은 매우 중요한 수입규제의 수단일 수 있는 것이다.⁴¹⁾ 즉 WTO체제하에서 비판

<표 8> 특별긴급 관세의 종류

	물 량 기 준	가 격 기 준
근 거	농업협정문 제5조 1항(i) (관세법 제12조의 3)	농업협정문 제5조 1항(ii) (관세법 제12조의 3)
부가기준	수입물량의 발동기준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수입가격이 발동기준가격에 미달하는 경우
부과범위	관세상당치(TE)의 1/3범위 이내	가격차에 따라 누진세율 적용
부과기간	부과 당해년도에 한함	사안에 따라 다름
제외대상	부과이전에 계약되어 수출국에서 선적된 물품	수입량이 6개월 이상 계속 감소하는 물품

자료 : 심달섭, "농산물에 대한 긴급관세제도 도입", 「나라경제」, 1995년 2월호.

즉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관세의 부과가 허용되는 것이다. SSG는 관세화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관리의 혼란과 수입국의 농업붕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인정해 준 일종의 관세화 예외조치이므로 변동할 수 있는 요건도 매우 까다롭다. WTO농산물협정문에는 회원국양허품목의 해당년도 수입량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해

시장벽이 철폐되고 관세제도로 바뀔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한 농산물의 수입이 급증할 것이 예상되므로 국내농산물의 경쟁력은 더욱 취약해질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원칙적으로는 물량기준

41) 또한 「관세법」 상의 조정관세가 국제법에 직접적인 근거 규정이 없고 농산물 뿐만 아니라 공산품도 대상이 되는 반면 특별긴급관세제도는 대상이 농산물중 TE양허품목에 한정되어 있고 국제협정에 직접적인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강봉순 상계서 P.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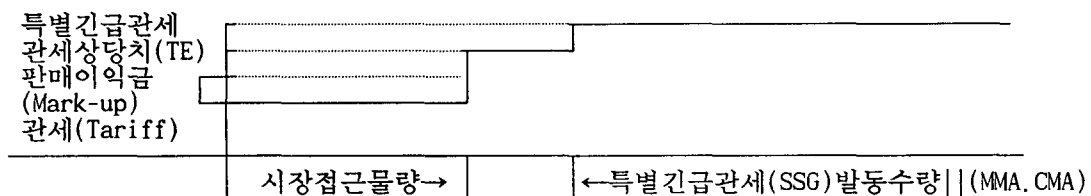
에 근거한 SSG의 발동기준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물량기준 SSG는 수입물량이 급증하여 정해진 발동기준물량을 초과할 경우 자동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준 물량은 최근 3년간('91~93년) 평균 수입량에 수입품의 국내시장 점유율에 따른 기준발동계수를 곱한 것에 최근 국내소비량의 변화('92~93년)를 더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국내시장점유율이 높은 수입품은 낮은 기준발동계수를 적용하여 수입증가로 인한 피해를 상대적으로 더 신속하게 줄일 수가 있다. 한편으로 물량기준으로 그 수입증가세가 미미하다 할지라도 수출국들의 다양한 수출지원책으로 인하여 실제 수입가격이 낮아질 경우에 대비하여 가격기준의 SSG발동기준도 보완해야 한다.

또한 생산의 계절성등으로 인하여 공급기간이 짧거나 부패성이 강한 농산물은 단기간의 수입으로도 극심한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품목들은 사전에 특별 수입감시품목으로 지정고시하여 수입가격 및 수입물량등을 지속적으로 파악 피해예방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즉 TE로 수입이 자유화되는 111개 품목에 대하여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할 경우에 (그림 1)과 같이 특별 긴급관세를 추가로 부과하여 국내 농산물시장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3.2.2 국영무역

WTO체제하에서 비관세장벽을 철폐하고 대신 그와 동일한 효과를 갖는 관세로 전환할 경우 세계시장의 가격변동효과가 그대로 국내시장에 전가되므로 국내농산물가격의 불안정성이 증대할 것이다. 더우기 MMA와 CMA에 의한 수입가격의 이중적 형성으로 국내시장가격의 교란은 심화될 가능성이 있고 쿼터를 배정받는 수입업자에게 막대한 수입차익을 발생시키게 되어 불합리한 소득분배의 요소가 발생한다. 농산물 수출국들이 MMA 및 CMA의 보장을 요구하는 이유는 세계시장가격이 크게 상승할 경우 높은 관세상당치(TE)의 부과가 수입을 금지시키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수입물량 범위내에서는 낮은 관세의 부과를 통해서 최소한의 수출물량합보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수입국내에서는 불합리한 수입차익의 가능성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 농산물가격의 안정화와 소득의 불균형분배방지를 위해서 WTO규범내에서 국영무역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WTO규범상 국영무역에 관한 부분은 「17조 해석에 관한 양해(Understanding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of the GATT 1994)」에 있는데 첫째 대상기업은 법적 권한을 포함한 배타적이거나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고 구매 또는 판매를 통해 동권한 행사를 함으로써 수출입의 수



(그림 1) 특별긴급관세 적용 모델

준 또는 방향에 영향을 주는 유통위원회(Marketing board)을 포함한 정부 또는 비정부기업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과거보다 국영무역기업의 범위가 넓어 졌다. 둘째 통고는 1960년 질문서양식에 의거하도록 하고 타채약국이 통고의무를 수행치 않을 경우 이의제기 및 역통고작업을 위하여 전문적인 작업반을 구성하도록 함에 따라 과거와 달리 철저한 규정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국영무역제도는 향후 강화된 규범과 규율에 효과적으로 대응키 위해 가능한 개선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은 당초 MMA물량과 CMA물량 혹은 수입쿼터를 설정한 품목중 118개 품목(HS 10단위 기준)에 대하여 동쿼터물량에 한하여 정부 또는 지정된 국영기업이 저율관세에 추가하여 수입부가금(Import Mark-up)을 부과하고 국영무역제도에 의하여 수입을 관리하겠다고 제안하였으나 최종적으로 97개 품목으로 조정되었다.⁴²⁾ 이에 대한 운용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볼 수 있다.

먼저 시장접근물량으로 부터 가능한 농민의 피해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동접근물량이 그대로 국내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접근물량을 원료로 하여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가 있다면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다만 이 때의 가공용 수요창출이 국내산을 원료로 하는 가공품과 대체관계에 있을 경우 효과가 반감되므로 가공용으로서의 새로운 수요 창출이 요구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서 시장접근물량을 가공업체에 부여하는 방법도 모색될 수가 있다.

첫째 국내농산물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가공수출의 기회가 없거나 혹은 해당품목

의 국내가격이 불안정하여 안정적인 원료공급이 어려웠던 경우 저세율만 부과되는 시장접근물량을 원료농산물로 사용하여 가공함으로써 수출이 가능하다면 시장접근물량이 국내시장에 유통되지 않게 되어 국내가격의 하락을 어느정도 방지할 수가 있다. 여기에 적합한 품목으로는 쌀과자, 과일통조림, 김치용고추와 마늘등을 들 수가 있다.

둘째 지금까지 가격 또는 품질차이등을 이유로 가공품을 직접 수입해 왔던 경우 해당 원료품의 시장접근물량을 가공업체에 줌으로써 수입 대체효과와 함께 시장접근물량에 의한 원료농산물의 국내시장직접유입을 차단할 수가 있을 것이다. 단 해당가공품이 기존 국내산 원료 농산물을 사용해 왔을 경우 국내산 원료농산물과의 대체효과가 우려되나 향후 새로운 수요 증가가 확실시 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이를 활용한다면 국내산 원료농산물과의 대체관계로 인한 피해는 상당히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는 일정비율의 국내농산물을 병행해 사용토록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가 있다. 여기에 적합한 품목으로는 햄, 소세지, 오렌지쥬스등을 들 수가 있다.

다음으로 시장접근물량을 가격안정용 완충재고(Buffer Stock)물량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현재 시장접근물량은 과잉생산으로 국내가격이 폭락할 때에도 시장접근물량의 수입가격이 하락된 국내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대로 수입될 수가 있다. 그런 경우 그 물량이 국내시장에 그대로 유통된다면 가격을 더욱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국영기업이 이를 수입하여 저장 보관하였다가 적기에 방출하여 가격안정화를 꾀해야 할 것이다.⁴³⁾ 특히

42) 이재욱외, 1994, 12, p.7.

43) 이 경우 보관능력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보관시설의 수요를 품목별로 점검해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국내적으로 생산통제를 하는 품목의 경우 국내 수급과 연계해서 시장접근물량을 국영무역으로 운용한다면 대외적으로 국영무역을 하는 정당성을 확보할 수가 있을 것이다. 즉 시장접근물량이 유입됨으로써 가격이 하락하고 이에 따라 생산이 장기적으로 감소하는 경우 시장접근물량을 관리하여 발생하는 수입차익을 탈농하는 농가에게 보조금을 지불할 경우 이러한 보조금은 UR 보조금 계산에 가산되지 않으며 국영무역을 하는 또 하나의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끝으로 Mark-up으로 인한 수입은 기금등으로 흡수하여 시장개방의 직접 피해부문인 농업에 전액 재투자하여 경쟁력 강화를 꾀할 필요도 있지만 역으로 이 기금을 이용하여 수출보조금 감축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출시장의 개척도 도모해 볼 필요가 있으므로 이런 방향의 운용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3.2.3 동식물 검역

WTO체제에서는 농수산물의 시장개방폭이 확대됨에 따라 동식물의 검역물량이 대폭증가할 것은 물론이고 수입되는 농산물은 다양화되고 수입국도 다변화될 것이다. 이와 같이 검역물량은 급격히 증가할 전망이다. 동식물 검역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제도의 미비, 그리고 제반시설 및 장비, 전문인력등의 부족으로 국민건강 및 국내 동식물의 보호차원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가트하에서 회원국들은 가트 제20조 (b)항을 농축산물의 수입에 대한 규제수단으로서 자의적으로 활용해 왔다.⁴⁴⁾ 그러나 WTO에서는 「식품위생 및 동식

물 검역조치 협정」의 관련조항에 근거하여 회원국들이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수준과 평가방법을 규정함으로써 조치적용의 명료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대하고 있다. 즉 기존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TBT협정)이 개정되어 WTO일괄법안의 일부가 되었고 식품안전 및 동식물 위생에 대해 명확하고 상세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여 모든 국가가 위생보호상의 필요성과 과학적 원칙에 근거한 요건만을 부과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다른 국가의 식품안전 및 동식물 위생규정에 대해 과학적 근거에 의하여만 당해조치가 정당하지 못하다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자국의 관련규제조치에 대한 일관성의 유지와 투명성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WTO체제하에서 이 부분이 독립협정으로 다루어지게 된것은 농산물협정에 의해 농산물무역이 국제규범내로 들어 오에 따라 이를 강화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무역에 영향을 줄수 있는 농산물 수입의 검역규정은 국제적 규범에 부합되어야 하고 인위적인 수입장벽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시해 놓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검역시설이나 장비, 검역인력등이 충분하게 갖추어 있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안고있다. 국제적 규범에 맞게 식품안전이나 동식물위생검역을 하기에는 현재 우리의 인력이나 장비로서는 여러가지 무리가 따르므로 검역기간이 길어지는등 통상문제를 유발하게 되는것이다.⁴⁵⁾

학적 원칙에 근거한 위생보호상의 요건만을 부과하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식품안전 및 동식물 위생규제를 빙자한 인위적인 수입장벽을 쌓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45) 최근 미국이 자국산 감귤에 대한 통관지연 문제로 한국을 WTO에 제소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정부는 '선통관 후 검사제'를 도입함으로써 제소문제를 해결하려고

44) UR협상에서는 무역에 영향을 주는 식품안전 및 동식물 위생규제에 대해 각 국가가 국제적 규범에 부합하고 과

특히 미국등 선진국에서는 수확후 저장을 목적으로 하는 농약의 사용(Post-Harvest)이 허용되고 있으며 축산물에 대한 성장촉진 질병예방을 위한 광범위한 항생물질사용, 식품첨가제사용이 증가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한편으로 각국의 위생 및 검역조치를 자의적으로 운영해 오며 따라 이 제도가 수입장벽의 역할을 해온 면도 적지 않았다. WTO체제하에서도 과학적 근거가 충분할 경우 국제기준 보다 엄격한 위생 및 검역조치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위생 및 검역조치는 규제국가의 검역기술기준 및 운용여하에 따라서 WTO상 적법한 수입제한 및 금지조치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위생 및 검역관련기술이 앞서 있는 선진국으로서는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위생 및 검역조치를 사실상 비관세장벽으로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 즉 과거 관련국제기구⁴⁶⁾를 통해 전문적으로 다루어져 온 검역분야가 WTO체제로 편입됨에 따라 위생 및 검역규제문제는 단순히 검역전문가의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무역상의 문제로 대두되게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위생 및 검역규제 문제는 순수위생 및 검역차원의 기술적 문제와 그것의 무역에 영향을 주어 통상문제화되는 복잡한 양상을 띠는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도 검역제도를 강화함으로써 불필요하게 통상문제를 야기시키기보다는 검역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와 우수한 검역인력의 충분한 확보로 무엇보다도 먼저 국민건강과 동식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현행 국제기구의 기준, 지침, 권고와 국내 위생 및 검역조치의 일부 규정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의 일치를 위한 법령개정이 요구된다.

또한 과학적 근거주의에 맞도록 위생 및 검역기술을 과학화하고 국제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품목별 할당제를 통해 전문인력을 선발하고 육성하는 한편 검역연수를 담당할 연수선타 운영 및 국내외 연수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관련상대국의 위생 및 검역관련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법규, 제도, 기준의 명문화작업이 요처되며 위생 및 검역국제화의 객관적 지표가 될 위험평가제도의 도입을 위해 각국의 제도를 비교검토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위험평가모델의 수립이 필요하다.

3.2.4 종량세 및 탄력관세제도의 운용

우리나라는 농수산물에 대한 관세체계가 그동안 증가세 위주로 운영되어온 관계로 저 품질 내지 저가 농산물의 수입급증에 대한 대책이 미흡했다. 예를 들면 저가의 중국산 농산물이 대량으로 수입되어 국산으로 둔갑하여 판매가되어 국내 농가의 피해가 증대되었다.

특히 WTO체제하에서는 양허세율의 인하로 현행관세율 및 관세제도를 통한 농업보호효과는 매우 제한적 일 수 밖에 없다.⁴⁷⁾ 이러한 수입개방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우리의 관세제도의 개

시도하고 있으나 이럴경우 제소문제는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의 식품 안전과 동식물 위생문제는 그대로 남게 되는 것이다. <강봉순, 상계서, p. 56.>

46) 과거 위생 및 동식물 검역문제는 사실상 관련 국제기구에서 전문적으로 다루어져 왔는데 여기에는 FAO, CODEX, IPPC, OIE, APPPC(아태지역 식물보호위원회), RPPOS(Regional Plant Protection Organization: 지역식물보호기구)등이 있다. <농경연, 동식물 검역의 대내외 여건변화와 대응방안, p. 12.>

47) UR타결에 따라 양허품목은 종전 전체품목의 11% (138개)에서 74%(934개)로 늘어 났으며 양허평균세율도 종전 95%에서 69%로 인하되었다.

편이 요구되고 있다. 즉 지금과 같이 단순하고 천편일률적인 증가세율위주의 관세제도를 미국, 일본 EC, 캐나다등과 같이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도 최종 CS에서는 쌀보리, 겔보리, 대두 등과 중국산 저급 농산물을 포함하여 총 63개농산물에 대해서 從量稅를 시행할 것에 합의했다. 종량세가 도입될 경우 HS동일 분류하에서 저가품에 대해서도 고가품과 동일한 관세액부과로 저가 수입품으로 부터 國內産業을 보호할 수 있으며 수량만 확정되면 세액은 자동 결정되기 때문에 從價稅에 비해 행정관리가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국제가격의 등락에 관계없이 財政收入의 안정도 도모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HS분류상품에 품질 및 가공도 차가 큰 것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과세 부담의 불공평이 야기될 가능성이으며 양허품목의 세율변경시 이해당사국과 협의를 해야하는 단점도 있다.⁴⁸⁾ 또한 WTO에도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할 것이다.

관세나, 할당관세, 조정관세, 차액관세등 활용가능한 탄력관세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운용해야 할 것이다.

IV. 결론

WTO체제하에서는 관세및 관세상당액의 감축이행이라는 제약으로 농산물 수입제한정책의 탄력적 활용의 폭이 매우 좁기는 하지만 국내농업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관세인하 및 관세상당액의 감축과 WTO규범을 적극 활용하여 관세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수입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WTO에서 농산물에 대해 특별히 허용하고 있는 SSG에 의한 특별긴급수입제한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動植物檢疫制度등을 시급히 개

(표 9) 주요국의 從量稅 운영 현황

		HS 품목수(A)	종량세적용 품목수(B)	비율(B/A)	주요적용품목
미국	전체	9,121	1,179	12.9%	육류, 낙농품, 채소류, 과일, 담배, 유지류, 주류 등
	농산물	1,311	516	39.4%	
EC	전체	9,545	146	1.5%	채소, 과일, 음료, 주류, 담배, 설탕등
	농산물	2,092	121	5.8%	
일본	전체	8,368	450	5.4%	육류, 유지류, 당류, 음료, 주류, 채소, 설탕등
	농산물	1,716	126	7.3%	
한국	전체	10,417	21	0.2%	영화필름, 비디오테이프
	농산물	1,502	-	0.0%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재 미국, EC, 일본 등은 자국내 農業保護와 일부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의 자국산업보호를 위해 從量稅率을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도 계절

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관세장벽을 철폐하고 대신 그와 동일한 효과를 갖는 관세로 전환할 경우 세계시장의 가격변동효과가 그대로 국내시장에 전가되어 국내 농산물가격의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더우기 MMA와 CMA에 의한 수입가

48) 韓國農村經濟研究院, 「UREI결에 따른 農畜産物 市場開放의 波及 影響 分析」, 1993.12., pp. 81-83.

격의 이중적 형성으로 국내시장의 교란현상과 함께 소득분배의 외곡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내 농산물 가격의 안정화와 소득의 불균형 방지를 위해서 WTO규범 내에서 국영무역을 운용할 필요성도 있다. 그리고 종가세 위주로 운영되어온 우리의 관세체계를 대폭 개편하여 미국, 일본, EU, 캐나다 등과 같이 종량세 및 계절관세, 할당관세, 슬라이드관세 등 탄력관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TE로 수입이 자유화되는 111개 품목에 대하여는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할 경우에 SSG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를 추가로 부과하여 국내 농산물시장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姜奉淳, 「農畜産物 市場開放에 따른 輸入管理 方案」,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5. 6.
- 國會事務處, 「우루과이라운드와 主要國의 農業 政策」, 1991.
- 김성준, 「WTO법의 형성과 전망」, 삼성출판사, 1996. 12.
- 對外經濟政策研究院, 「WTO出帆과 新交易秩序: 分野別 內容과 示唆點」, 1994. 7.
- 大宇經濟研究所, 「우루과이라운드와 韓國經濟」, 1994.
- 朴炳鎬, 「WTO體制와 韓國의 新貿易政策: WTO의 影響과 韓國의 對應」 「國際學術發表 論文集」, 韓國貿易協會, 1995.2.
- 韓國農村經濟研究院, 「우루과이라운드 農産物協 商白書」, 1994. 11.
- 韓國農村經濟研究院, 「UR타결에 따른 農畜産物 市場 開放의 波及影響 分析」, 1993. 12.
- , 「수입개방이후 농산물 수입관리대책에 관한 연구-국영무역의 효율적 운용방안을 중심으로-」, 1994. 4.
- , 「우루과이 라운드 農業 協定文 解説」, 1994. 1.
- Fitchett, D. A., *Agricultural Trade Protectionism in Japan: A survey (World Bank Discussion Papers 28)*, Washington, 1988.
- GATT, "News of the UR of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Marrakesh 94, April, 1994.
- Jackson, J. H., *World Trade and the Law of GATT*, Indianapolis, Bobbs Merrill, 1969.
- Jackson, J. H. & W. J. Davey, *Legal Problems of Int'l Economic Relations*, West Publishing Co. 1986
- Krasner, Stephen D., "Regimes, Regionalism, and Changing Power Configurations", paper presented at the Int'l Conference on Globalization, Democratization and Reunification by the Kore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1994, July 19-20.
- Einzig, Paul, *The History of Foreign Exchange*. New York, Macmillan Co, 1970.
- King, Philip, *International Economics and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Mc Graw-Hill International Editions, 1990.
- Kuznets, S., *Modern Economic Growth: Rate, Structure, and Spread.*, Yale Uni.

- Press, 1966.
- Kenwood, A. G. and A. L. Lougheed, *The Growth of International Economy 1820-1980*.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83.
- Kindberger, C. P., *The World in Depression 1929-1939*. Berkeley, Calif. Univ. of Calif. Press, 1975.
- Miner, W. M. and D. E. Hathaway, *World Agricultural trade: Building a Consensus*. Quebec, The Institute for Research on Public Policy, 1988.
- Paarlberg, D., "Agriculture Loses Its Uniqueness",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Dec. 1987.
- Stewart, J. P., *The Gatt Uruguay Round: a negotiating history (1986-1992)*, Volume I, *Commentary*, Kluwer Law and Taxation Publishers, 1993.
- UNCTAD, *Uruguay Round: Papers on Selected Issues*. New York, 1989.
- USDA, *Food for peace (1987 Annual Report on public Law 480)*. 1989. 11.
- USDA, *Trade Policies and Market Opportunities for U.S. Farm Exports: 1989 Annual Report*. 1990. 2

A Study on the Regulation of WTO in Agriculture and its Import Management of Korea

Geun-Soo Park*

Abstract

The main contents of WTO agricultural product agreement are composed of ① market access ② domestic subsidy and reduction of export subsidy ③ preferences for developing countries. But there still remains the possibility of laying a protection barrier within WTO regulations. That is to say, with the application of quota system, tariff rate quota system, or different quotas on different countries, and with the practices of government control trade and mark up. This paper is for studying the application of these protection barriers to minimize the impact of agricultural market opening.

* Kyungnam College of Information and Technolog, Dep.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